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하의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평가

고 영 일
인세회계법인 이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는 IFRS(국제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IFRS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관한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 심포지엄」이 지난 6월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IFRS 하에서의 공정가치 평가

IFRS의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에 의해 판단과 추정에 의한 회계처리가 많아지게 되고, 가치 평가방법론, 측정방법론에 대해 회계정보 작성자 및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IFRS를 도입한 국가는 물론 회계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논란을 겪고 있

다. 공정가치는 market-to-market과는 다른 개념으로 측정하려는 시장가치가 없는 수많은 자산과 부채에도 공정가치는 존재할 수 있다. 공정가치란 활성화되어 있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존재하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buyers와 sellers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공정가치를 유출가격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유입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옳은지 혼란스러우며, 시장참여자 관점도 누구를 시장참여자로 볼 것이며, 시장참여자가 어떠한 가정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또한 보고실체의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보고실체가 재무상 어려움을 겪어 신용위험이 증가할 때 부채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이득을 보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IFRS에서는 유·무형자산 등에 대해서 공정가치의 측정을 선택적으로 허용케 하는 공정가치 측정옵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회계기준보다 광범위하게 공정가치 측정을 규정하고 있어 IFRS를 전면도입하려는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 입장이다.

회계정보가 목적적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가 충분히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공정가치의 전면적인 확대가 정당화될 수 있다. IFRS로 인하여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 IFRS 하에서의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 평가 중에서도 자산의 성격상 자의성이 가장 많으며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평가가 바로 무형자산의 평가이다. 특히 사업결합과정에서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어려움 이전에 어떠한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인식할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존재한다. 또한 IFRS 하에서는 영업권이나 비한정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말고 자산손상 검사만을 통하여 감액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결합과정에서 영업권과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의 정도에 따라 향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무형자산의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무형자산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초과지급액의 대부분을 영업권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향후 영업실적이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손상처리에 따른 이익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며, 이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의 부담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IFRS 도입에 따라 회사나 감사인 모두 채

계적인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더불어 영업권손상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이 필요한 것이다.

IFRS에서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자산에는 피취득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무형자산, 채고자산 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피취득기업의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무형의 자산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취득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권리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자산과 분리가능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므로 각각의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각각의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단순합산할 경우 가치가 이중으로 반영되거나 과소계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결합과정에서 인식해야 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 국내 규정 관련 평가기법

1. 가치평가서비스수행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무형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나열하고 있다.

① 이익기준평가접근법

이익이나 현금흐름 등 효익을 자본화하거나 미래의 효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잔존내용연수, 현재의 이용 및 미래에 예상되는 이용, 귀속되는 권리 등의 사항들을 고려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고려사항에 아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다년간의 초과이익에 대한 할인
- 시장에서의 로열티
- 회피가능로열티

② 자산기준평가접근법 또는 원가기준평가접근법

조정순자산법을 이용한다.

③ 시장기준평가접근법

유사상장기업비교법, 유사기업거래비교법, 평가대상기업내의 유사매각거래비교법 등 세가지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무형자산에 자주 이용되는 세가지 시장기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교가능제3자거래법
- 비교가능이익률법
- 회피가능로열티법

2.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 ‘비상장주식평가에관한회계처리’)

이 실무의견서는 전체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며 무형자산평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는 평가접근법으로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익접근법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② 시장접근법

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③ 자산접근법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과세목적을 위한 평가방법이므로 재무보고목적을 위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제64조, 상증령제59조①).

② 영업권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제59조②).

③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및저작권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상증령제59조 ③~⑥).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광업권및채석권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일정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준칙제81조, 제82조)

4. 기술보증기금 및 기술거래소

기술수명, 미래현금흐름의 크기,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 기술자산구성비, 기술완성도를 추정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한다. 기술수명, 기술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한 기술자산 구성비 및기술완성도계수를 구하는 데 상당한 주관성이 개입된다.

■ 회계기준 상의 평가기법

1. K-IFRS 제038호 무형자산

특정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추정기법이 해당자산이 속해 있는 산업의 현행거래와 관행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기법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측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자산의 수익성지표(예: 수익,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에 현행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적용하는 방법이다. 로열티면제법은 무형자산의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로열티수입에 현행시장상황을 반영하는 배수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②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자산으로부터의 추정미래순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으로서 로열티면제법을 들 수 있다. 로열티면제법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제3자로부터 그 무형자산을 라이선스 받을 경우 미래에 지급할 순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방법이다.

③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해당 무형자산을 창출하거나 대체할 경우 소요되는 원가로 평가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선택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 1단계: 동일 무형자산의 시장가격(market approach)
- 2단계: 유사자산의 시장가격에 대한 조정가격(market approach)
- 3단계: 다른 평가기법 적용(income approach, cost approach)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평가기법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방법에는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이 있다.

1. 원가접근법

원가접근법은 해당 무형자산을 생성하는 데 소요된 모든 관련원가들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재생산원가(reproduction cost)나 대체원가(replacement cost)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재생산원가란 해당 무형자산이 개발된 최초의 기술수준으로 정확하게 복제된 무형자산을 재생산하거나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하며, 대체원가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해당 무형자산이 창출하는 효용을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한다.

원가접근법으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형자산을 재생산 또는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총원가에 기능적·기술적·외부적 진부화나 물리적 감모, 기능저하 등으로 인한 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이익접근법

이익접근법은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를 자산을 소유 또는 이용함으로써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예를 들어, 이익증가액 또는 원가절감액)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익접근법은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가정에 따라 로열티공제법, 현금흐름할인법, 다기간초과이익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로열티공제법(Relief from Royalty Method)

로열티공제법은 기업에 해당 무형자산을 직접 소유·이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공제) 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 방법은 이익접근법의 변형된 형태로 로열티율을 이용하여 계산된 미래이익흐름을 미래경제적효익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로열티공제가치, 즉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로열티공제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무형자산에는 상표권, 브랜드, 노하우 등이 있고, 로열티공제법을 부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에는 자체개발한 기술, 특허 등을 들 수 있다. 로열티공제가치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text{로열티공제가치} = \text{NPV}(\text{기대수익} \times \text{로열티율}) - \text{NPV}(\text{원가})$$

(2)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위험수준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현금흐름의 유입과 유출의 관점에서 직접현금흐름법(direct cash flow method)과 증분현금흐름법(incremental cash flow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현금흐름법은 현금유출의 관점에서 해당자산을 보유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는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증분현금흐름법은 현금유입의 관점에서 해당 무형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미래에 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초과수익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3) 다기간초과이익법(Multi Period Excess Earnings Method)

초과이익접근법은 재무상태표적인 관점과 손익계산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재무상태표적인 관점은 평가대상 무형자산을 이용하지 않거나 동종산업의 무형자산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무형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창출가능한 증분이익을 자본화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손익계산서 측면의 관점은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화한 가치에서 다른 자산들이 기여한 부분을 차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손익계산서접근법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과이익을 산출하는 데 이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text{무형자산의 가치} = \text{NPV}(\text{현금창출단위의 정상이익} - \text{기타 자산의 적정이익})$$

다기간초과이익법을 통해 평가대상 무형자산의 가치가 산출된 후에는 해당 무형자산 및 다른 자산들의 요구수익률의 기중평균과 현금창출단위 전체의 내부수익률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다기간초과이익법은 주문잔고, 고객관계, 계약관계 무형자산 등에 적용될 수 있다.

3. 시장접근법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 무형자산과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거래된 무형자산과 평가대상 무형자산간의 계약, 기술수준, 거래조건 등의 차이 등을 조정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text{무형자산의 가치} = \text{시장에서 유사한 무형자산이 거래된 금액} \times \text{차이조정승수}$$

이러한 시장접근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거래 특히 브랜드, 특허, 노하우 등은 당사자간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된 거래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우며,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 수 있다.

둘째, 유사 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은 계약조건, 기술수준, 시장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

가대상 무형자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무형자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거래조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유사거래에서의 거래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즉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 기업상황, 시장상황, 경제상황 등에 따라 유사거래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PPA Method

사업결합시 매수가격과는 관계없이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다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단순합산할 경우 취득한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매수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K-IFRS 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사업결합시에 매수가격배분 (Purchase Price Allocation: PPA)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가격배분법은 사업결합과정에서 인수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과 부채 뿐만이 아니라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에 따라 매수가격을 배분하는것이다. 즉 사업결합시 취득기업은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에는 재무제표에기록된 자산·부채 뿐만이 아니라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도 함께 측정한다. 여기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란 피취득기업의 장부에 계상되어있지 않더라도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권리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자산과 분리가능한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사업결합시 취득기업이 지급한 매수가격은 이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당자산과 부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 나머지 가액은 영업권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의 측정은 취득기업의 입장에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재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결합 이전에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계상한 영업권이나 이연법인세 등을 계상해서는 안된다.

사업결합시 매수가격배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걸쳐 이루어진다.

1단계: 내부수익률(IRR)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추정을 위한 종속기업 전체가치 평가

2단계: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 인식

3단계: 무형자산 공정가치 평가

4단계: 평가결과 조정

■ 정책적 제언 및 미래연구

1. 가치평가업무의 주체

감정평가협회는 IFRS의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 급기야 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하여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타인의 의뢰를받아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행하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업무는 모든 평가업무가 해당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은 다양한 공정가치 평가 전문가집단의 평가업무를박탈하고 공정가치 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의 고유업무로 하고자 하려는 취지이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등의 평가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부동산공시법의 입법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것이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채권평가회사, 증권회사, 보험계리사, 외국평가법인, 보석감정사, 고미술품감정인 등 보수를받고 평가업무를 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모든 평가인의 업무가 불법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는 재무제표 작성목적의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작성에서 그 기업의 특성, 회계정책, 해당 자산의 기업에서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유형자산의 평가에 있어 기업의 특성이나 회계정책 등에 따라서 재취득원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 매도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며, 유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더욱이 부동산감정평가법에 의한 감정

평가방법으로 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과 무형자산 등 기업의 다양하고 복잡한 자산의 공정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업의 매수·합병과정에서 기업의 가치(공정가치)에 대한 회계실사는 거의 대부분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정가치의 측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자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와 부채의 가치 등도 평가를 하여야만 하므로 회계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회계적 판단에 근거하여 각 자산별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등의 평가를 감정평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시킬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목적의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작성목적의 공정가치 평가가 적정한지의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공인회계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정 자격사에게 독점적인 평가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동개정안으로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외감법에 따른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규정하게 되면 마치 모든 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평가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수의 기업에 대하여 한정 의견을 내거나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2.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강화의 필요성

2011년 IFRS의 전면도입으로 금융자산·부채, 유형 및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었다. 공정가치 평가는 재무정보의 목적적합성을 제고시키는 반면,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적용한 가치평가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 신뢰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 또한, IFRS에서는 공정가치의 서열체계, 사용한 가정 등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업의 주석기재는 미

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이 IFRS 조기적용 기업 점검결과, 공정가치 평가방법 미기재 등 미준수 사항 다수가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가치 평가기관은 관련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무수행기준, 내부통제기준 등을 운영한다.

공정가치 외부평가자 선정방식은 시장자율방식과 공적규제방식이 있을 수 있다. 기업과 외부평가자 간의 유착방지 및 평가자의 독립성·공정성확보를 위해 기업의 내부통제절차 강화가 필요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공정가치 외부평가자 선정과 관련하여 준수할 내부통제절차에 관한사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외부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및 이의 준수여부 점검, 외부평가자 선정시 내부의사결정과 정(예,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회의결) 마련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3. 공정가치평가기 외부전문가의 활용과 법적 책임

IFRS 도입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대상 항목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맞춰 심사감리시 평가의적절성 및 감사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부실감사사례를 전파해야 한다. 특히,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경우, 거래의 자산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경우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의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의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평가전문가에 가치평가업무를 의뢰하기도 한다.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하고, 기업은 과대평가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일부 감사인은 감사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등)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비상장주식 등을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후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재무제표

감사결과의 최종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으므로 외부전문가의 평가결과 활용시 감사증거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감사인에게 권고해야 할 것이다. 감사인이 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가 평가한 부정정한 공정가치를 인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감사인은 회계감사 부실로 금융위의 징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와 감사인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가치 평가라는 것이 본연적으로 가정과 판단 그리고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어떻게 구분지어 나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일부 경험이 적은 회계법인들이 낮은 단가에 업무를 수입하여 외부전문가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평가결과를 검토하는 충분한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를 맡기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가격보다는 적격성과경험을 충분히 검토하고 선임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회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여, 이를 적절히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외부전문가의 공정가치 평가가 적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무제표 작성의 제1차 책임이 있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4.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전적 ·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

원칙중심의 IFRS도입에 맞춰 기본적으로 회사의 판단을 존중하되 전문가의 판단차이로 논란이 있는 과실사항은 지도위주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그기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판단과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의 금액, 서열체계, 사용한 평가기법 및 가정, 자산손상 등 상세한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IFRS 조기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주석기재 내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매우 부실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재내용의 범위 및 양식이 시행 몇 년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나 신뢰성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적 · 예방적 차원의 회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IFRS의 원활한 정착 및 재무공시의 품질제고를 위해, IFRS 시행 초기에는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기재사항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데 회계감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감독당

국은 기업이 공시자료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IFRS 재무공시사항 Checklist' 를 사전에 배포하고, 이후 점검시 공정가치 관련 공시사항의 취약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효율적인 감리인력 운영을 위해 기존 감리업무는 한계기업을 위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부실기재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위주의 감독보다는 정정공시 등을 통해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IFRS 위반사항 심의를 위해 IFRS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제 도입을 추진하고,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토록 하는 감사인등록제도의 도입도 회계감독을 예방적 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IFRS 체제 하에서 다양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주체는 아무래도회계법인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우선적으로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사절차의 철저한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공시에 대한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국제감사기준은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평가하고, 회계추정시 사용되는 특정 모델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에 대한 통제를 평가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또한 회계추정시 경영진이 사용한 제가정이 합리적인지 그리고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산출한 방법 및 통제의 효과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5.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제의 도입

공정가치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적합성(relevance)측면에서 매우 우월하지만, 현실적으로 활성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할 경우 정확한 공정가치의 측정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뢰성(reliability)의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정가치 회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가치 추정치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무형자산 평가나 PPA와 같은 부분이 워낙 새롭고 전문적인 분야라서 각 기업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에도 전문인력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공정가치 평가전

문가집단을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춘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집단이 충분히 양성되어, 공정가치 추정치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공정가치의 추정에 드는 비용이 감소할수록 사회후생(social welfare)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가치 평가전문가의 양성과 교육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이들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사후적으로 감리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과 감사절차 및 법적 책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어느 조직의 어느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을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공정가치 평가 미래연구

공정가치 평가 실무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첫째,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용 근거와 장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적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회계법인 글로벌본부가 수행한 대부분의 실무적인 연구들은 공정가치에 대한 관련규정 조사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주내용은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 및 영업권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기법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이나 평가절차에는 논리적인 정당성이나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 평가실무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가이드라인일수 있으나 그러한 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사후적인 평가를 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의 다양한 평가방식의 장단점, 논리의 정당성을 비교검토한 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공정가치의 추정에 사용되는 투입자료를 기회주의적으로 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로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견해와 주관적 판단과 추정의 개입으로 오히려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가치 평가정보가 의도적인 이익조정 행위로 인한 오차와 영업환경의 불확실성 및 평가방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측정오차인지를 구분해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추후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평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정책당국이 공정가치 평가정보를 어떻게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거시경제변수와 산업전반동향이 공정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침체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시장가격에 거품이 형성된 시기에도 공정가치 평가는 유사한 재무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난 수년동안에 형성된 전세계적인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최근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즉, 과도한 경기침체나 과도한 경기활황시기에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이러한 경우에 적절한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감사인이 공정가치 평가 회계정보와 관련된 위험과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수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공정가치 평가는 수많은 판단과 추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평가방법 및 측정방법에 대해 감사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이 공정가치 평가정보의 신뢰성(또는 검증가능성) 여부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가 필요하다. 또한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 감사유지기간 그리고 산업전문성이 어떤 형태로 감사품질에 상호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도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에 인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K-IFRS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실무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의 연구와 논의는 공정가치 평가기법과 평가절차에 대한 논리와 정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정가치 평가기법과 평가절차를 사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